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450
----------	-----

2023년 3월 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병운 의원 외 34명

나. 제안일자 : 2023년 02월 02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02월 09일

라.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운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제3항)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외의 것은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14. ~ 2.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동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1) 교통정책과-2479호(2023.2.14.)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상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2)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로인 자전거도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시장은

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적용범위 관련(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적용하고자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것임
-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도로교통법」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상충을 방지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부족액 부담주체

의안명	제안일자	심사진행상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2022.11.11	소관위접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0.11.13	소관위심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의원 등 22인)	2020.09.17	소관위심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적용범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